



행복한 아동을 만드는 사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송상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의 성장과 안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및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데 합의했다. 안녕이라는 개념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과 결부된다. ‘안녕’은 객관적 측면으로는 아동의 생활환경을 포함하며, 주관적 측면으로는 개인의 만족도나 욕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생활환경이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며 아동의 안녕과 성장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의 안녕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일생을 따라 변화하지만, 특히 유년기의 생활환경은 아동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바로 이것이 세계인권선언이 ‘안녕’을 거론하고 유엔아동인권선언이 이를 보장할 것을 주창했던

이유이다. 이는 아동의 나이와 성장에 따라 필요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녕을 위해서는 이런 변화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안녕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안녕과 삶의 만족도, 더불어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가 다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어떤 권리보다 작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아동 관련 정책의 주된 문제 중 하나는, 아동을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주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따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 14, 15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인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기초적 권리들이 아동에게 있어서는 자주 무시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를 보완한다. 위 권리들은 아동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원하는 모든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 아동의 관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오히려 그 의견을 반영하고 파악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 의견을 확립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아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적절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동, 권리가 쉽게 무시되고 있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법 안에서 아동이 평등하다고 주장했을 때, 이는 어떤 철학적 개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행동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평등이란 구체적으로는 접근 가능성의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즉, 개개인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에 자신이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접근 가능성은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떤 장벽도 없도록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장벽은 예를 들어, 계단이나 지리적 거리 등의 물리적 장벽은 물론 근무자의 부정적 태도라든가 정보의 부족 또는 두려움이나 걱정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까지도 포함한다.

아동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중에게 맞추어 가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역할이다. 아동은 서비스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방법, 사용 도구 등에 대해 알맞은 언어로 아동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폭력은 양부모나 편부모, 법적 대리인 또는 누구라도 아동을 보살피는 동안 가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나 훼손, 유기, 무시, 부적절한 대우 또는 착취, 성폭력까지를 포함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착취, 성적 학대, 유기 및 매매, 불법 물질 사용 등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를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동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항상 아동의 의견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아동의 다른 권리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아동 스스로가 폭력에 반대하는 실질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취약성은 아동 개인의 성격 외에도 아동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의 복합적인 결합에서 기인한다. 아동보호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아동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줄이거나 아동 스스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동의 발달을 위한 모든 활동의 총체를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정신적, 지적 발달을 지지하고 아동의 발언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언제나 아동이 자신의 나이와 성숙도에 걸맞게 점차적으로 독립성을 키워 나가고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적용하는 규범이 아동의 성장에 기여해야 하며 모욕적인 처벌을 피해야 한다.

학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모든 교육 사업과 교육 내용은 학교 활동을 보충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는 학문적 의미의 지식을 넘어 아동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훗날 경제,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 역량은 책 읽기, 숙제 도와주기 등 학교생활을 통해 계발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함께 통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동, 음악, 자연탐구 등과 같은 여러 학교 밖 활동 및 건강교육, 직업교육 등과 같이 학교, 가정교육을 대체하는 특정 분야의 교육을 통해 계발될 수도 있다. 시민의식, 타인 존중,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나 세대 간의 소통 역시 위와 같은 역량 계발 활동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때 장애 아동과 이주 아동에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아동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동 교육의 요체가 학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이 수업 시간에 국한되어 있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학교를 벗어난 자연 속 교육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지적 발달 역시 아동 교육에 포함된다. 이는 아동 간의 문화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다. 놀이터는 아동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며, 아동이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어른들의 접근이 항상 허락되지만은 않는 공간이다.

사실 ‘놀이 권리’는 종종 기본권리이기보다는 부차적인 권리, 사치스러운 권리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오락 활동은 아동을 아동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는 가장 ‘아동다운’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놀이, 스포츠, 문화예술과 같은 오락 활동은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고 자존감을 형성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 관용의 가치를 배우고 불평등을 해소한다. 놀이터, 문화행사 공간, 가족과 아동을 위한 의견 표출 공간 등 사회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여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I)에서 각 도시들이 모두에게 살기 적합한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 결의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안녕은 건강한 도시, 민주적 도시, 나아가 굿거버넌스의 궁극적 지표임을 선언하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각 지역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거버넌스, 법적 체계, 예산을 재정비할 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그 지자체의 정책과 시스템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동정책에 관한 쟁점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아동의 개인적·공동체적 발전을 공고히 하고, 내 권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기여하는 연대 활동을 장려하며, 다양성을 중시함을 뜻한다. 더불어 배움을 실천하고 교육적, 정서적 발달을 공유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활동과 건강, 교육, 문화, 스포츠, 그리고 시민권 등의 가치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한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공공서비스도 단 한 명의 아동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